

가입·탈퇴 규정

가입·탈퇴 규정

제정 2021. 11. 09.
개정 2024. 02.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시골프협회 정관 제6조 제1항 및 제10조의2 제4항에 따른 회원 및 회원단체의 용인시골프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본 회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본 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본 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회원 및 회원단체 규정에서 정한 회원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3. “올림픽대회 종목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은 제8조 등급 및 가입심의 당사의 ~~올림픽대회(이하“올림픽”이라 한다)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안게임”이라 한다)의 개최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 (삭제 2024.02.20.)
4.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제8조 등급 및 가입심의 당사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대회의 개최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 (삭제 2024.02.20.)

제3조(가입신청서류) ① 본 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 및 회원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 말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장의 신원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5. 단체의 규약 및 제 규정
6.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자료 및 회의록
7.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8.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9.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동호인조직 등록 현황
10.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1.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2.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13.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에 관한 참고자료 (삭제 2024.02.20.)

②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연맹이 없는 종목 단체는 자료의 제출을 예외로 한다. (삭제 2024.02.20.)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 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1. 용인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삭제 2024.02.20.)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삭제 2024.02.20.)
3. 용인사를 통할하는 권위와 자도력이 안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삭제 2024.02.20.)
4. 16명 이상의 회원이 해당 회원단체에 가입되어 있을 것 (개정 2024.02.20.)
5.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개정 2024.02.20.)
6.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로부터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 다만, 경기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삭제 2024.02.20.)

~~7.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삭제 2024.02.20.)~~

8. 본 회의 정관 및 '용인시골프협회 회원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개정 2024.02.20.)

~~②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종목이며, 동시에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제1항제4호와 관련한 시종목단체 조직 수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024.02.20.)~~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 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 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1. 용인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삭제 2024.02.20.)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삭제 2024.02.20.)

3. 용인시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삭제 2024.02.20.)

4. 12명 이상의 회원이 해당 회원단체에 가입되어 있을 것 (개정 2024.02.20.)

5.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개정 2024.02.20.)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삭제 2024.02.20.)

7. 본 회의 정관 및 '용인시골프협회 회원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회원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개정 2024.02.20.)

~~②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시종목단체가 4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동계 올림픽 종목에 대하여는 시종목단체 조직 수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024.02.20.)~~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 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 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용인시종목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용인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삭제 2024.02.20.)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삭제 2024.02.20.)

3. 용인시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삭제 2024.02.20.)

4. 4개 이상의 동호회나 클럽이 해당 종목단체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삭제 2024.02.20.)

6. 본 회의 정관 및 '용인시종목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정단체의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시종목단체 조직 수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024.02.20.)~~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 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제7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본 회 정관 제10조에 따른다.

② 본 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하며,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종목이며 동시에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02.20.)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회는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경과 기관과 심의 요청 또한 같다. (개정 2024.02.20.)

제8조(등급 및 가입심의) ① 본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

② 등급심의에서 정회원, 준회원단체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때는 해당 단체가 된다.

③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유보단체로 지정하고, 1년간의 가입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에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단체의 자격을 회복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9

조에 따르며, 후보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본 회의 사업 참여와 예산지원의 제한을 받는다.

④ 본 회의 등급 및 가입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의 회의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회원 또는 회원단체가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본 회의 해당 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개정 2024.02.20.)

② 본 회의 정관 제9조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본 회의는 해당 단체를 제명시킨다.

③ 본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또는 회원단체에 대하여는 규정 제10조2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24.02.20.)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회원으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개정 2024.02.20.)
2. 회원 또는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잃었거나 본 회의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02.20.)
3.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본 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종목단체일 경우
5.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일 경우

④ 본 회의가 해산한 경우 본 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탈퇴신청) 회원 본 회의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본 회의 양식)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관련서류 일체(서명부, 회의록, 사진 등)

부 칙(2021. 11.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